

#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99
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8년 9월 7일  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침을 민간기업 등에게 준수를 요청하고 불이행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한다는 규정은 「지방자치법」, 지방계약법의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. 시장은 서울시 및 그 산하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·기관·협회에게 지침의 준수를 요청할 수 있음(안 제9조 제3항)

#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·기관·협회 등으로 하여금 공정거래 지침을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안 제12조 중 “③”을 “②”으로 한다.

## <수정안 조문대비표>

제정안	수정안
<p>제9조(공정거래 지침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·기관·협회 등으로 하여금 공정거래 지침을 따르도록 요청할 수 <u>있고</u>,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(공정거래 지침) ① ~ ②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·기관·협회 등으로 하여금 공정거래 지침을 따르도록 요청할 수 <u>있다</u>.</p>
<p>제12조(기관·단체 지원) ① (생략)</p> <p>③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</p>	<p>제12조(기관·단체 지원) ①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</p>

##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이 보수 및 고용방식, 계약조건 등과 관련하여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프리랜서”란 「근로기준법」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공공기관, 민간기업, 협회 또는 단체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프리랜서가 「근로기준법」 등에 따른 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하

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.

**제6조(기본계획)** 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,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2. 업종별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
3.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
4.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·홍보
5.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·제도 개선사항
6. 그 밖에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,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, 전문가, 관련 단체나 협회,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**제7조(시행계획)**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.

**제8조(실태조사)** 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형태, 보수, 계약조건 등 프리

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,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9조(공정거래 지침)** 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침(이하 “공정거래 지침”이라 한다)을 개발하여 보급한다.

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공정거래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, 서울특별시 구청장 또는 민간기업·기관·협회 등의 장에게 공정거래 지침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·기관·협회 등으로 하여금 공정거래 지침을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0조(공정거래 지원센터)** 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부당 계약, 보수 지연지급,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

1. 프리랜서를 위한 법률·세무·노무 상담 및 대응 지원
2.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
3.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
4.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 설립 및 육성 지원
5. 그 밖에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무

**제11조(지원센터 운영의 위탁)** ① 시장은 제10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·단

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12조(기관·단체 지원)** 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13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